

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·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이념) 자살은 예방이 가능한 사회적 문제로 시민이 처한 다양한 심리적·사회적·환경적 요인을 감안하여 성별·연령별·계층별·동기별 등 다각적인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공공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.

제3조(시민의 권리와 의무)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② 시민은 시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, 자살위험자나 자살시도자 등을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사전 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생명존중문화의 조성
2. 자살상담메뉴얼 개발 및 보급
3. 성·연령·계층·자살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대책
4.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
5.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
6.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·치료 및 사후관리
7. 자살자의 가족 상담 및 지원
8.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
9.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
10.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
11.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
12. 자살예방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
13. 그 밖에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청장과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6조(자치구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) ① 시장은 자치구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자치구별 시행계획의 수립·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자치구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자살예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1.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
3. 자살예방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

제8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.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복지건강실장이 된다.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
1.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
2.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센터(이하 “자살예방센터”라 한다)의 장
3. 정신건강분야 전문가로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4.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인권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5. 신문·방송·통신 등 언론분야 전문가
6.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한으로 한다.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신보건팀장이 된다.
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(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)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·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응급의료기관, 소방방재청 및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,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10조(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)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성·연령·계층·자살동기 등에 대한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·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·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③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, 의료기관 및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1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자살예방을 위한 24시간 상담
2.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
3. 자살시도자 사후관리
4.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
5.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
6.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
7.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「정신보건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전문성, 인력, 시설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에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제12조(자살위험자 지원 등) ① 시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,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자살예방지킴이 양성
2. 정신건강 선별도구의 개발 및 보급
3.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지원
4. 그 밖에 자살위험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

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, 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관련기관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제13조(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단기 입원 및 입소 치료 프로그램
2.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정서지원프로그램
3.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치료지원
4. 그 밖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의 자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

② 시장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, 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관련기관을 통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, 구축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시는 프로그램을 지원함에 있어서 자살자·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4조(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) ① 시장은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5조(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자살위기개입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자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자살예방센터와 정신보건센터
2. 시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
3.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
4. 서울지방경찰청
5. 응급의료센터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

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·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16조(민간단체 등의 지원)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사업의 다각화를 위하여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7조(비밀누설의 금지)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살예방위원회에 대한 존속기한)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자살예방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, 기간만료 후 서울특별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.

제3조(자살예방센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자살예방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로 본다.

